



**이촌세무법인**  
e-Chon Tax Accounting Corp.

[03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3 삼공빌딩 8층(청진동136) T.02-735-5780 / F.02-735-5783

---

수 신 : 서울교통공사  
참 조 : 해외사업처  
제 목 : 해외용역제공의 영세율 적용 관련 세무 검토 의견서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의 해외사업처에서 요청한 해외용역제공의 영세율 적용 관련

세무 검토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 해외용역제공의 영세율 적용 관련 세무 검토 의견서

2018년 05월 30일

이 촌 세 무 법 인

담당이사/세무사 김 동 현

첨부.

해외용역제공의 영세율 적용 관련 세무 검토 의견서

## I. 개요

공사는 미얀마 현지 등록기업인 Mandalay Golden Line Park Co. Ltd. (미얀마기업과 한국기업이 결합한 Joint Venture)로부터 [미얀마 만달레이 케이블카 개발사업 사업관리용역]을 요청받아 계약코자 합니다. 미얀마 기업이 계약당사자 값이 되고 공사가 계약당사자 을이 되는 계약으로 공사 직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 II. 질의내용

- 본 사업은 공사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미얀마에서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한 조세를 면세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미얀마 측의 조세제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Mandalay Golden Line Park Co. Ltd.(갑)와 서울교통공사(을)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미얀마의 부가세 면세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법

## III. 검토내용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외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와 관련된 국내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의 영세율 상호주의는 양국가가 자국내에서의 거래에 대해 서로 부가가치세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때에만 상호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각국가의 국내거래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 설립된 대한민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미얀마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미얀마 거래세가 과세 됩니다. 미얀마의 기업이 대한민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한민국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미얀마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은 수출이고 미얀마의 기업은 수입에 해당할 뿐입니다. 국내거래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른 영세율 적용과 수출기업의 영세율 적용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의 조세조약을 비롯한 조세조약에서는 비거주자의 체약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조세협약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이며 부가가치세 등의 거래에 따른 세금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교통공사가 용역의 수출자가 되어 해외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매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미얀마의 법인이 교통공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미얀마 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원천징수가 용역의 해외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사는 거래에 수반되는 과세 문제로 인해 계약금액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용역대금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의 거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미얀마 정부가 거래대금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미얀마 거래세는 계약금액과 별도로 하여 미얀마 법인이 부담하게 한다면 계약금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국의 과세에 따른 계약금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한국-미얀마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동산·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 (4) 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미얀마의 경우

- (1) 1974년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법률 제7호, 1974년)
  - (2) 1996년 이익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익세(법률 제4호, 1976년)
- (이하 "미얀마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이 조에서 규정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되어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세법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상기 의견은 본 세무사의 개인적 의견으로 공사의 의사결정에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